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51호)

2025.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355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3

I.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355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태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0. 13.

다. 회 부 일 : 2025. 10.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무장해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
3 신설).

3. 검토의견

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3(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7조의2¹⁾에서는 노인 복지 측면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²⁾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³⁾을 설치할 수 있도록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놀이시설과 관련하여서는 복리시설의 측면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⁵⁾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는 없음.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관리대상 놀이시설은 총 84,682개소로 그 중 절반 이상인 45,600개소가 주택단지에 위치한 놀이시설이나, '25.6월 기준 정책토론회의 발표자료⁶⁾에 따르

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6) '25.6.18.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의 발제자료 참고 (주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면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는 43개(약 0.05%)에 불과하며 대부분 도시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24년 말 기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만 12세 이하의 인구 4,319,008명 중 동일 연령대의 등록장애인 수는 55,983명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비율은 약 1.3%임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도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이 수반되는 공공주택 단지에 선도적으로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합놀이기구의 기반을 조성함과 아울러 장애아동에게 차별 없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의 입법으로 평가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내 공공주택 통합놀이기구 시범지구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무장애 통합놀이기구의 법적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등에 법적 정의와 시설 및 안전기준이 먼저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법 제37조의2의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공공주택단지 내 설치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별도로 규정한 측면이 있으나,

어린이놀이터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의무설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통합놀이기구가 포함될 경우 공공주택단지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여 현행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장애 통합놀이기구는 비장애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통합놀이기구’로 변경⁷⁾하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등 놀이기구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인천광역시도 무장애 통합놀이기구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7)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51개 단지 중 36개 단지에 일부 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임.